

수정일자

2019. 03. 31.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유 원 대 학 교

※ 학과구조 조정에 따라 모집단위 및 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

1.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캠 퍼 스	학군	모집단위	입학 정원	2019 학년도 이월 인원	전형유형								계
					정원내			정원외					
					수시 일반 학생	특기자 (검도)	정시 일반 학생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출신자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화 고졸재 직자	
영 동 캠 퍼 스	사 회 서 비 스 학 군	호텔관광항공학과	30	1	30		1						31
		경찰·소방행정학부	150		149		1	2					152
		사회복지학과	40	1	40		1				3		44
		영재보육학과	30	1	30		1						31
		스포츠학부	50	1	47	3	1						51
	웰 니 스 학 군	호텔외식조리학과	30		29		1						30
		와인식음료학과	30	1	30		1						31
		웰니스융합학부	40	1	40		1						41
		건축공학과	30	1	30		1						31
	보 건 교 육 학 군	보건행정학과	30	1	30		1						31
		유아교육과	20		19		1	2					22
		초등특수교육과	30	1	30		1	2					33
		중등특수교육과	30		29		1	2			3		35
		간호학과	30		21		9	3	3	3			39
		치위생학과	30		29		1	3	2	2			37
		물리치료학과	30		29		1	3	3	3			39
		작업치료학과	50		49		1	3		1			54
아 산 캠 퍼 스	I C T 학 군	4차산업융합학부	60	1	60		1						61
		스마트IT학과	50	1	50		1	2	1			10	64
		정보통신보안학과	30		29		1	2	1			10	43
		자동차소프트웨어학과	30		29		1	2		1		10	43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30		29		1	2				10	42
	한 류 문 화 학 군	뷰티케어학과	60		59		1	2	1			10	73
		미디어콘텐츠학과	30	1	30		1	2					33
계			970	12	947	3	32	32	11	10	6	50	1,091

※ 2019학년도 이월인원 승인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2. 수시모집

1) 전형유형별 전형요소

전형유형 (학생부 위주(교과))	모집단위	최저 학력 기준	선발방법 및 비율	전형요소 반영비율						
				학생부			면접			총점
				비율	최고	최저	비율	최고	최저	
일반학생	전모집단위 (아래학과제외)	없음	일괄합산 (100%)	60	600	120	40	400	80	1,000
	작업치료학과, 4차산업융합학부, 자동차소프트웨어 학과	없음	일괄합산 (100%)	100	1,000	680	-	-	-	1,000
특기자(검도)	스포츠학부	없음	일괄합산 (100%)	60	600	120	40	400	80	1,000
농어촌 학생	농어촌 (아래학과 제외)	없음	일괄합산 (100%)	60	600	120	40	400	80	1,000
	작업치료학과, 자동차소프트웨어 학과	없음	일괄합산 (100%)	100	1,000	680	-	-	-	1,000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성화고교출신자 (아래학과 제외)	없음	일괄합산 (100%)	60	600	120	40	400	80	1,000
기초생활수급 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아래학과 제외)	없음	일괄합산 (100%)	60	600	120	40	400	80	1,000
	작업치료학과, 자동차소프트웨어 학과	없음	일괄합산 (100%)	100	1,000	680	-	-	-	1,000
장애인등대상 자	사회복지학과, 중등특수교육과	없음	일괄합산 (100%)	60	600	120	40	400	80	1,000
특성화고등을 졸업한재직자	스마트IT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 학과,뷰티케어과	없음	일괄합산 (100%)	40	400	80	60	600	120	1,000

2) 학생부 전형유형별 전형요소

전형유형	모집단위	적용대상 고교 졸업년도	학년별 반영비율(%)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100%)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성적
일반학생	전모집단위	전학년도	40	40	20	100
특기자(검도)	스포츠학부	전학년도	40	40	20	100
농어촌 학생 (정원외)	농어촌학생	전학년도	40	40	20	100
특성화고교출신자 (정원외)	특성화고교출신자	전학년도	40	40	20	10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기초생활수급자	전학년도	40	40	20	100
장애인등대상자 (정원외)	사회복지학과 중등특수교육과	전학년도	40	40	20	100
특성화고등을 졸업한재직자(정원외)	스마트IT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뷰티케어과	전학년도	40	40	20	100

3)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전형유형	모집단위	반영교과	반영요소
일반학생	전 모집단위 (보건계열제외)	1학년: 전교과(단, 음/미/체 제외) 중, 1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2,3학년: 전교과(단, 음/미/체 제외) 중, 각 2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3학년 1학기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석차등급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1학년: 국/영/수/사/과 중, 1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2,3학년: 국/영/수/사/과 중, 각 2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3학년 1학기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석차등급
특기자(검도)	스포츠학부	1학년: 전교과(단, 음/미/체 제외) 중, 1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2,3학년: 전교과(단, 음/미/체 제외) 중, 각 2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3학년 1학기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석차등급
	농어촌학생 (보건계열제외)	1학년: 전교과(단, 음/미/체 제외) 중, 1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2,3학년: 전교과(단, 음/미/체 제외) 중, 각 2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3학년 1학기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석차등급
농어촌 학생 (정원외)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1학년: 국/영/수/사/과 중, 1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2,3학년: 국/영/수/사/과 중, 각 2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3학년 1학기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석차등급
	특성화고교출신자 (보건계열제외)	1학년: 전교과(단, 음/미/체 제외) 중, 1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2,3학년: 전교과(단, 음/미/체 제외) 중, 각 2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3학년 1학기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석차등급
특성화고교출신자 (정원외)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1학년: 국/영/수/사/과 중, 1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2,3학년: 국/영/수/사/과 중, 각 2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전교과(단, 음/미/체 제외) 중, 3학년 1학기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석차등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1학년: 전교과(단, 음/미/체 제외) 중, 1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2,3학년: 전교과(단, 음/미/체 제외) 중, 각 2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3학년 1학기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석차등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1학년: 국/영/수/사/과 중, 1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2,3학년: 국/영/수/사/과 중, 각 2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3학년 1학기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석차등급
	장애인등대상자 (정원외)	1학년: 전교과(단, 음/미/체 제외) 중, 1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2,3학년: 전교과(단, 음/미/체 제외) 중, 각 2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3학년 1학기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석차등급
장애인등대상자 (정원외)	사회복지학과	1학년: 전교과(단, 음/미/체 제외) 중, 1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2,3학년: 전교과(단, 음/미/체 제외) 중, 각 2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3학년 1학기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석차등급
특성화고등을 졸업한재직자 (정원외)	스마트IT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뷰티케어과	1학년: 전교과(단, 음/미/체 제외) 중, 1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2,3학년: 전교과(단, 음/미/체 제외) 중, 각 2학년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3학년 1학기 석차등급이 높은 3과목	석차등급

4) 학생부 없는 자 교과 성적 반영방법

전형유형	전형대상	반영방법
일반학생	1. 검정고시출신자 2. 외국의고등학교과정이수자	1. 학생부비교내신(석차등급에의한기준점수표)적용 2. 학생부비교내신(석차등급에의한기준점수표)적용
특기자	1. 검정고시출신자 2. 외국의고등학교과정이수자	반영안함
농어촌학생	1. 검정고시출신자 2. 외국의고등학교과정이수자	반영안함
특성화고교출신자	1. 검정고시출신자 2. 외국의고등학교과정이수자	반영안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검정고시출신자 2. 외국의고등학교과정이수자	1. 학생부비교내신(석차등급에의한기준점수표)적용 2. 학생부비교내신(석차등급에의한기준점수표)적용
장애인등대상자	1. 검정고시출신자 2. 외국의고등학교과정이수자	1. 학생부비교내신(석차등급에의한기준점수표)적용 2. 학생부비교내신(석차등급에의한기준점수표)적용
특성화고등을 졸업한재직자	1. 검정고시출신자 2. 외국의고등학교과정이수자	반영안함

5) 면접

전형유형	모집단위	면접방법	면접기준
일반학생	전모집단위 (일부제외)	다대다 구술면접	인성(도덕성,사회성), 가치관 및 자아관, 학구적 태도 및 적성, 기초평가 등 종합적으로 평가
농어촌 학생	전모집단위 (일부제외)	다대다 구술면접	인성(도덕성,사회성), 가치관 및 자아관, 학구적 태도 및 적성, 기초평가 등 종합적으로 평가
특성화고교 출신자	전모집단위 (일부제외)	다대다 구술면접	인성(도덕성,사회성), 가치관 및 자아관, 학구적 태도 및 적성, 기초평가 등 종합적으로 평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모집단위 (일부제외)	다대다 구술면접	인성(도덕성,사회성), 가치관 및 자아관, 학구적 태도 및 적성, 기초평가 등 종합적으로 평가
장애인등대상자	전모집단위 (일부제외)	다대다 구술면접	인성(도덕성,사회성), 가치관 및 자아관, 학구적 태도 및 적성, 기초평가 등 종합적으로 평가
특성화고등을 졸업한재직자	전모집단위 (일부제외)	다대다 구술면접	인성(도덕성,사회성), 가치관 및 자아관, 학구적 태도 및 적성, 기초평가 등 종합적으로 평가

7) 정원내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전형유형	모집단위	지원자격 및 기타
일반학생	전모집단위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특기자(검도)	스포츠학부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세계/전국 검도대회 개인 3위 이내 입상 또는 단체 4강이내 입상자(단,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2. 학년별 수업일수의 70%이상 출석 필수(1학년/2학년/3학년 1학기)

8) 정원의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전형유형	공통지원자격	지원자격 및 기타
농어촌학생	-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 6년(중1학년~고교입학에서 졸업까지)(부모거주) - 12년(초.중.고 전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부모비거주)
특성화고교 졸업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나' 목에 해당하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졸업자 -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제외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 종합고의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가능	전문교과 30단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라' 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②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③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④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⑤ 차상위 건강 보험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 ⑥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대상자 ⑧ 차상위 자활급여 사업 대상자 ⑨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대상자 ⑩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대상자(구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
장애인등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특성화고등을 졸업한재직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정시모집

1) 모집시기

모집군	원서접수기간	전형기간	모집학과
가군	2019. 12. 26.(토) ~ 2019. 12. 30.(수)	2021.01.02(토) ~ 10(일)	영동캠퍼스 학과 전체
다군		2021.01.20(수) ~ 28(목)	아산캠퍼스 학과 전체

2) 전형유형별 전형요소

(1) 정시모집 가군(전형유형별 전형요소)

전형유형 (수능위주)	모집단위	최저 학력 기준	선발방법 및 비율	전형요소 반영비율									
				수능			학생부			면접			총점
				비율	최고	최저	비율	최고	최저	비율	최고	최저	
일반학생	전 모집단위	없음	일괄 합산 (100)	100	1,000	680	-	-	-	-	-	-	1,000
농어촌 학생 (정원외)	경찰·소방행정학부, 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 과, 작업치료학과	없음	일괄 합산 (100)	100	1,000	680	-	-	-	-	-	-	1,000
특성화고 교출신자 (정원외)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없음	일괄 합산 (100)	100	1,000	680	-	-	-	-	-	-	1,000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 층 (정원외)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없음	일괄 합산 (100)	100	1,000	680	-	-	-	-	-	-	1,000
장애인 등 대상자 (정원외)	사회복지학과, 중등특수교육과	없음	일괄 합산 (100)	100	1,000	680	-	-	-	-	-	-	1,000

(2) 정시모집 다군(전형유형별 전형요소)

전형유형 (수능위주)	모집단위	최저 학력 기준	선발방법 및 비율	전형요소 반영비율									
				수능			학생부			면접			총점
				비율	최고	최저	비율	최고	최저	비율	최고	최저	
일반학생	4차산업융합학부,스마트IT학과,정보통신보안학과,자동차소프트웨어학과,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뷰티케어학과,미디어콘텐츠학과	없음	일괄합산 (100)	100	1,000	680	-	-	-	-	-	-	1,000
농어촌 학생 (정원외)	스마트IT학과,자동차소프트웨어학과,정보통신보안학과,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뷰티케어학과,미디어콘텐츠학과	없음	일괄합산 (100)	100	1,000	680	-	-	-	-	-	-	1,000
특성화고 교출신자 (정원외)	스마트IT학과,정보통신보안학과,뷰티케어학과,미디어콘텐츠학과	없음	일괄합산 (100)	100	1,000	680	-	-	-	-	-	-	1,000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정원외)	자동차소프트웨어학과, 미디어콘텐츠학과	없음	일괄합산 (100)	100	1,000	680	-	-	-	-	-	-	1,000
특성화고 등을졸업 한재직자 (정원외)	스마트IT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뷰티케어학과	없음	일괄합산 (100)	-	-	-	40	400	80	60	600	120	1,000

3)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전형유형	모집단위	수능성적 활용지표	반영 영역수	수능영역별 반영비율(100%)					탐구 영역 반영 과목 수
				국어	수학 (가/나)	영어	탐구 영역 (사/과/직)	한국사	
일반학생	전 모집단위	등급	4 (선택)	(25)	(25)	(25)	(25)	(25)	1
농어촌 학생 (정원외)	경찰·소방행정학부, 유아교육과, 초등 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간호학과 ,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 학과, 스마트IT학과, 정보통신보안학과 , 자동차소프트웨어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뷰티케어학과, 미디어콘텐츠 학과	등급	4 (선택)	(25)	(25)	(25)	(25)	(25)	1
특성화고교 출신자 (정원외)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스마트IT학과, 정보통신 보안학과, 자동차소프트웨어학과, 반도체 디스플레이학과, 뷰티케어학과, 미디어콘텐츠학과	등급	4 (선택)	(25)	(25)	(25)	(25)	(25)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자동차소프트웨어학과, 미디어콘텐츠학과	등급	4 (선택)	(25)	(25)	(25)	(25)	(25)	1
장애인등대상자 (정원외)	사회복지학과, 중등특수교육과	등급	4 (선택)	(25)	(25)	(25)	(25)	(25)	1

※ 등급별 점수 반영비율 : 1,000점변환기준(1등급:1000 ~ 9등급:680)

4) 정원내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전형유형	모집단위	지원자격 및 기타
일반학생	전모집단위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5) 정원의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전형유형	공통지원자격	지원자격 및 기타
농어촌학생	-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 6년(중1학년~고교입학에서 졸업까지)(부모거주) - 12년(초·중·고 전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부모비거주)
특성화고교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졸업자 -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제외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전문교과 30단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라' 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②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③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④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⑤ 차상위 건강 보험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 ⑥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대상자 ⑧ 차상위 자활급여 사업 대상자 ⑨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대상자 ⑩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대상자(구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
장애인등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특성화고등을 졸업한재직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